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 석,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정준호,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시설의 방문객 및 이용객을 측정하는데 그 수치가 과다측정되는 등 부정확함. 시설 방문객 및 이용객 수치는 해당 시설의 주요 경영 및 성과평가 자료로 사용되기에 해당 시설들의 방문객 및 이용객 측정을 정확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시설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미술관 관람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u> <u>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u> <u>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u> <u>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u> <u>현황을 관리한다.</u>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를 신설하여 미술관 관람통계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통계관리에 따른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별도의 비용수반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내부적으로 관람객 통계를 관리(Ex. 인원측정 카운터기 활용 등)할 경우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향후 관람객 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유지 관리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스템 도입을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정책적 판단 등)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